

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날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6 월 30 일

여 수 시 장 권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06호

붙임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여수시장은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. 다만,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시민 체육대회 행사

3. 각종 민속·문화행사

제4조 중 “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시민의 날) 여수시민의 날 (이하 “시민의 날”이라 한다) 은 10월 15일로 한다. <u>다만,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</u>	제2조(시민의 날) -----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
제3조(행사) <u>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제3조(행사) <u>여수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. 다만,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각종 민속·문화행사 및 체육행사</u>	2. <u>시민 체육대회 행사</u>
<u><신설></u>	3. <u>각종 민속·문화행사</u>
3. (생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4조(기본계획수립) <u>여수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	제4조(기본계획수립)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

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
한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
20명 내외로 하며, 다음 각 호
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
위촉한다.

1. 2. (생 략)

3. 여수시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

4. ~ 6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-----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